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1397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승낙의 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redacted]
피 고	의료법인 F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4.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redacted]시 G 전 1,217㎡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7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1

주문과 같다(주문에서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의 '[redacted]법원'을 '[redacted]법원[redacted]등기소'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H(2007. 10. 27. 사망)의 상속인들로써, H의 소유였던 [redacted]시 G 전 1,217㎡ 중 3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H의 의사에 따라 의료법인 I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7144호로 의료법인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증여는 의료법인 I이 양자간에 체결된 협약을 이행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인데, 의료법인 I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redacted]법원 2012가단1501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들은 증여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2013. 8. 14.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redacted]법원 2013카단4912)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의료법인 I에 대한 12,870,00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3. 9. 13.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날 가압류([redacted]법원 2013카단5455)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redacted]법원 2012가단15012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서 2013. 2. 22. "의료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1

인 I은 원고 A, B,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7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법인 I 측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redacted]법원 2013나2199 소유권말소등기), 2014. 1. 7. 의료법인 I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유효하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1

집행된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그에 위반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처분의 금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양자의 효력이 양립할 수 없어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 순위는 그 집행 순서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던 사실, 원고 A, B, C, D이 의료법인 I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의 법리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의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법원 [redacted] 등기소 2008. 4. 22. 접수 제7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무를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0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